

안산시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0
----------	-----

제출년월일 : 1999. 7.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 확보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방침과 관련하여 시범실시 동사무소(사1동, 와동)에 적용할 사무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시본청으로 사무이관을 통한 시범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동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시본청 이관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사1동·와동사무소에서 시본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함(안 별표중 문화체육·세무·사회복지·농어촌진흥·주택·건축행정)
-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등록에 관한 권한
 - 유통관련업자 등록, 변경, 폐업신고, 지도감독등
-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 주민세 개인균등할 부과징수 및 지방세 고지서 교부
- 쓰레기 적환장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
- 건축신고 수리 및 가설건축물 신고수리
- 시본청에서 수행하던 사무이나 동사무소 존치로 확정된 사무를 주민편의 측면에서 대부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사무를 위임함(안 별표중 세무행정)
- 납세완납(징수유예, 미과세)증명서 발급

- 동사무소에 위임되었던 사무중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폐지로 인한 관련조례 정비
 - 건축신고 수리 및 가설건축물 신고수리('99. 4.30개정)
 - 인장업 신고 및 지도감독('99. 1.21 인장업법 전면 폐지)
 - 농가 양곡의 대여 및 징수, 전량농가 실태조사(업무처리 실적 없음)
 -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등에 대한 권한('99. 1월 관련조례 폐지)
- 개별조례에 의거 동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시본청 이관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에서 사무가 시본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정비
 - 안산시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비치
 -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 민간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해당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선정함
 -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유적소재지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함
 - 안산시통·반설치조례
 -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동 반상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함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규칙
- 농지법, 동법시행령

- 건축법, 동법시행령
- 동사무소 사무·인력조정지침(경기도 자치 13101-1978('99. 6. 2)호 공문)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 : '99. 6. 23 ~7. 2 (10일간)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를 “그 일부를 대부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또는 동에 위임함으로써”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동장”을 각각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동장”을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동장”을 각각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 표]

위 임 사 무(제2조 관련)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문화 체육 행정	1.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주구운동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유통관련업자 등록 2.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 3. 유통관련업자 폐업 및 등록말소 4. 유통관련업자 폐쇄 및 수거 조치등 5. 유통관련업자 행정처분 주구운동장 관리운영(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제9조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제12조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 운영 및 사용조례 	출장소장, 동장 (새동장 · 와동장 제외) 출장소장, 동장 (새동장 · 와동장 제외) 출장소장, 동장 (새동장 · 와동장 제외) 출장소장, 동장 (새동장 · 와동장 제외) 출장소장, 동장 (새동장 · 와동장 제외)
세무 행정	1.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리	납세완납(징수유예, 미과세)증명서 발급 1. 주민세 개인균등할 부과 징수 2. 지방세 고지서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3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조 지방세법 제4조 및 제177조 지방세법 제25조 및 제28조, 제51조, 제51조의2 	출장소장 동장 출장소장, 동장 (새동장 · 와동장 제외) 출장소장, 동장 (새동장 · 와동장 제외)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복지 환경 행정	1.폐기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2.공중화장실에 대한 다음의 권한 3.생활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4.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쓰레기 적환장 관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u>보호</u> 대상자 조사 1.매장·화장 및 개장 신고 2.공설매장·화장장 및 납 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 증명 3.공설묘지의 사용 허가 4.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 비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 생활보호법 제17조 및 제19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동조례 제10조 	출장소장 출장소장,동장 (새동장·와동장 제외) 출장소장 동장 출장소장 동장 출장소장 동장 출장소장 동장 출장소장 동장
농어촌 진흥 행정	1.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2.농지원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다음 의 권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원부 작성 비치 및 열 람 또는 등본등의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8조, 동법시 행령 제10조 • 농지법 제51조및제52 조, 동법시행규칙 제50 조 	출장소장 출장소장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47조 •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 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제6조 및 제11조 	출장소장
주택 건축 행정	1.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중 다음의 권한 2. 건축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리	불법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 1. 건축신고의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 개축또는 재축 • 대수선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m²이하인 것 •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 높이를 3m이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 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 및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 연면적 합계 500m²이하인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69조 제1항 •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출장소장,동장 (서동장·와동장 제외)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p>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 • 시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홍행장,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공사용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 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시장이 도로변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 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m²이하인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m이하인 것 • 컨테이너 또는 폐 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출장소장, 동장 (새동장·와동장 제외)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구조의 건축물 • 농업용 고정식온실 •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 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 구조로 설치하는 것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p>3.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의 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6m를 넘는 굴뚝 • 높이 6m를 넘는 장식 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4m를 넘는 광고 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출장소장, 동장 (새동장·화동장 제외)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2m를 넘는 옥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m²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8m(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 한다)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제조시설 ·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 유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 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둘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임사항) (생략)</p> <p>제3조(감독) (생략)</p> <p>제4조(권한의 행사) (생략)</p>					<p>제1조(목적) <u>대부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또는 동</u></p> <p>제2조(위임사항) (현행과 같음)</p> <p>제3조(감독) (현행과 같음)</p> <p>제4조(권한의 행사) (현행과 같음)</p>				
<p> 별 표 </p>					<p>[별 표] 위임사무 (제2조 관련)</p>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 정보 체육 행정	1.(생략)	1. (생략)	• <u>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u>	출장소장 동 장	문화 체육 행정	1.(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 <u>음반·비디오물및계 임물에관한법률 제7 조</u>	출장소장, 동장(사1 동장,와동 장 제외)
		2. (생략)	• <u>음반및비디오물에관 한법률 제9조</u>	"			2.(현행과 같음)	• <u>음반·비디오물및계 임물에관한법률 제9 조</u>	출장소장, 동장(사1 동장,와동 장 제외)
		3. 유통관련업자 폐업신고	• <u>음반및비디오물에관 한법률 제11조</u>	"			3. 및 등록발 소	• <u>음반·비디오물및계 임물에관한법률 제12 조</u>	출장소장, 동장(사1 동장,와동 장 제외)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 공보 체육 행정	4. 유통관련업자 영업지도 감독	• 음반및비디오물에관 한법률 제21조	"		4..... 폐쇄 및 수 거조치등	• 음반·비디오물및기 임물에관한법률 제24 조	출장소장, 동장(사1 동장,외동 장 제외)		
	5.(생략)	• 음반및비디오물에관 한법률 제22조	"		5.(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출장소장, 동장(사1 동장,외동 장 제외)
내무 행정	6. 유통관련업자 교육	• 음반및비디오물에관 한시행규칙 제7조	"		<삭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출장소장, 동장(사1 동장,외동 장 제외)
	2.(생략)	1.(생략)	(생략)	출장소장 동 장	2(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출장소장, 동장(사1 동장,외동 장 제외)
1. 입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의 신고	• 입장업법 제3조	출장소장 동 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영업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	• 입장업법시행령 제3 조	출장소장 동 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 행정	<신설>	3. 폐업신고 4. 영업의 지도감독 (감독)	• 입장업법 시행령 제4조 • 입장업법 제7조	출장소장 동 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생략)	1.(생략) 2.(생략)	(생략) • 지방세법 제25조 및 제28조, 제51조, 제51조의 2	출장소장 동 장	세무 행정	1.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 한 다음의 권한	납세완납(징수유예, 미과 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법 제39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 21조 및 제22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조 • (현행과 같음)	출장소장 동장(사)1 동장, 외동 장 제외)
	1.(생략)	1.(생략)	• 폐기물업법 제5조	출장소장 동 장	복지 환경 행정	1.(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폐기물관리법 제13 조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출장소장 동장(사)1 동장, 외동 장 제외)
	<신설>	2. 공중변소 관리	• 폐기물업법 제5조	출장소장 동 장	2. 공중화장실에 대한 다음의 권한	2.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출장소장 동장(사)1 동장, 외동 장 제외)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 <u>구호에</u> 관한 다음의 권한	1. <u>요보호대상자 조사</u>	• (생략)	(생략)		3. <u>생활보호</u>	<u>보호대상자 조사</u>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u>매화장에</u> 관한 다음의 권한	1. <u>매장, 화장, 개장 신고</u>	•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규칙 제4조	(생략)		4. <u>매·화장에</u>	1. <u>매장·화장 및 개장 신고</u>	•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 제5조	(현행과 같음)
		2. <u>공설매장, 화장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u>	•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규칙 제4조	(생략)		2. <u>매·화장 및</u>	•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현행과 같음)
		3. (생략)	• 공설묘지설치및운영 조례 제4조	(생략)		3. (현행과 같음) <u>매장 및</u>	• <u>제5조</u>	(현행과 같음)
		4. <u>공설묘지사용금 및 수수료 징수</u>	(생략)	(생략)		4. <u>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어촌 진 흥 행 정	1. <u>농가미양곡에</u> 관한 다음의 권한	1. <u>대여 및 수납</u>	• 농가대여양곡전용에 관한법률 제3조	출장소장 동 장	농어촌 진 흥 행 정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 전량농가 실태조사		"	출장소장 동 장			<삭제>	<삭제>	<삭제>
	2.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제분업의 신고	• 안산시 규모이하제분 업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출장소장 동 장			2. <삭제>		
		2. 시설의 양도 임대 또 는 변경신고	• 안산시 규모이하제분 업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출장소장 동 장			1~4 <삭제>	<삭제>	<삭제>
		3. 제분업의 폐지 휴업 신고	• 안산시 규모이하제분 업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출장소장 동 장					
		4. 대장기록 관리	• 안산시 규모이하제분 업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출장소장 동 장					
	3.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매매증명 발급	•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동법 시행규 칙 제10조	(생략)	1. 농지취득자격증명 증명에 관한 다 음의 권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현행과 같 음)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주택 행정	4.(생략)	1.농지카드 및 농지원부 작성비치	•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생략)		2.(현행과 같음)	농지원부작성 비치 및 열람 또는 등본등의 교부	• 농지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50조	(현행과 같음)
	5.농지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농지관리위원회구성	•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 • 인도시설물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제6조 및 제11조	(생략)		3.(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농지법 제47조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제6조 및 제11조	(현행과 같음)
	1.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무허가건축물 철거조치동 원상복구 조치	• (생략)	(생략)	주택 건축 행정	1.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중 다음의 권한	불법건축물에등에 대한 조치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건축물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1.(생략)	• (생략)	출장소장 동 잠	<삭제>	2.건축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출장소장, 동장(사)1동장,외동장제외)

()

()

()

()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면적 합계가 <u>50m'</u>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신설> <신설> • 연면적의 합계가 <u>50m'</u>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u>100m'</u>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 높이를 <u>3m</u> 이하 범위안에서 <u>증축건축물</u> • <u>도시계획법에 의한</u> <u>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 500m'</u>이하인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u>85m'</u>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대수선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u>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m'이하인것</u> • 연면적의 합계가 <u>100m'</u> 이하인 건축물 •<u>증축하는</u> <u>건축물</u> • <u>도시계획법에 의한</u> <u>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u> <u>산업단지 및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하다)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 연면적 합계 500m'이하인 공장</u>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출장소장 <u>동장</u> <u>장</u>		2.(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출장소장, <u>동장</u> (사1) <u>동장</u> , <u>와동</u> <u>장제외</u>)

()

()

()

()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안에 설치하는 참 고용 척박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시장이 도로변등의 미 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 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 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M이하인 것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 •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 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이상인 것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3.(생략)</p> <p>• 높이 6m를 넘는 굴뚝</p> <p><신설></p>	(생략)	출장소장 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 용·비기린용 비닐하 우스 또는 천막 구조 의 건축물 농업용 고정식온실 유원지·종합휴양사업 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 구조로 설치하는 것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 는 건축물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p>• 높이 6M를 넘는 임식 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출장소장, 동장(사1 동장,외동 장제외)

()

()

()

()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높이 8m를 넘는 고사수조 • (생략) • 건축조례에 의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소각로시설 등 • (생략)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4M를 넘는 광고판·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현행과 같음) <p><삭제></p> <p>(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6m를 넘는 끌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8m(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u><신설></u></p> <p><u><신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쌔이로를 포함한다), 유통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

()

()

()